

- ☞ 신청방법 : [세부사업]란에서 해당 과제명을 클릭하여 신청
→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작성서식 등 : [첨부파일]란에서 해당 사업운영기준 및 작성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 내용작성 → 신청시 파일 업로드

2025년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1차)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창안개발, 제품생산, 홍보판로 등 단위과제 소요비용의 60% 지원
 - 단위과제별 지원한도 범위내 지원 (각 단위과제별 지원한도는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 여러 단위과제를 신청시 연간 3개 과제,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 (1차) 2025년 3월 17일(월) ~ 3월 28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025년 4월 25일(금) 예정 (신청이 일시 집중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서부권역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본사 소재지 우선)

<서부권역 사업비 출연 시군> : 광명, 군포, 시흥, 의왕, 과천, 부천, 김포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 신청 및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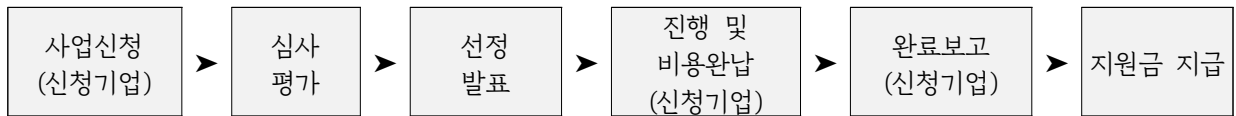
- ① 본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2)
- ②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④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⑤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⑥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⑦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⑧ 국·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他사업 지원과제 참여 중 부당지원 수혜자로 최종 제재 결정된 기업

3.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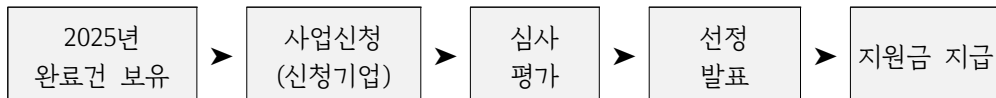
구분	사전신청과제	사후신청과제
신청분야	홈페이지, 제품패키지, 카탈로그, 홍보판로(동영상, 전문잡지) 시제품제작(금형·목업)	국내외상표출원·국내디자인출원, 국내외특허출원·국내실용신안출원, PCT출원, 규격인증획득, 시험분석, 전시박람회
과제진행	앞으로 진행할 과제신청 (선정일부터 최대 10월 31일까지 진행완료 가능한 과제 신청)	공고일까지 완료한 과제를 신청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진행완료한 과제를 소급받기 위해 신청)

☞ 사전신청과제



* 시제품제작(금형, 목업)은 5월말 2차 모집공고 예정

☞ 사후신청과제



4. 지원내용

- 건당 지원한도, 지원요건 등 상세내용은 **공통 운영기준** 및 **단위과제별 운영기준** 참조
- **총비용의 60%** 각 지원한도내 지원(기업자부담 40%),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제외

구분	단위 지원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고
창안 개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표, 디자인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상표출원 : 국내·해외 / 디자인출원 : 국내 	국내상표 200 (60%) 해외상표 500 (60%) 디자인 280 (60%)	2회차(5월말)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특허, 실용신안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국내특허 520 (60%) 실용신안 360 (60%)	

구분	단위 지원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고	
창안 개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해외특허 500 (60%)	2회차(5월말) 접수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사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해외)UL, FCC 등 해외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국내 300 (60%) 해외 700 (60%)		
	산업기술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과 관련한 산업 기술정보자료를 조사 후 기업체에 제공 	200 (10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신청 접수	
제품 생산	시제품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금형 1,500 (60%) 목업 500 (60%)	2회차(5월말) 접수	
	(사후) 시험분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비 지원 	200 (60%)		
판로 개척	(사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국내 300 해외 500 (60%)	신청 접수 중 (3월 17일~28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200 (60%)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 포장지 등 디자인·제작비용 지원 	300 (60%)		
	국내 홍보판로 지원	전문 잡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300 (60%)
		홍보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물 제작비 지원(일반 영상 또는 3D영상 제작) 		일반 300 3D 400 (60%)
	카탈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문 또는 수출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해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200 (60%)		

※ (사후) 표기 과제는 진행완료 후 신청하는 사후신청과제임.(미표기된 과제는 사전신청과제)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① 통합공고 상단 세부사업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명을 클릭(과제별 상세페이지로 이동)
 - ② 해당 상세페이지에서 운영지침 및 서식 등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내용을 숙지하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클릭
 - ③ 새 창이 뜨면 내용을 기입하고 다운받아서 작성한 서식과 제출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완료
 -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 - [나의 참여사업]에서 과제명과 신청완료 여부 확인 요망
* 궁금하신 사항은 [FAQ] 자주하는 질문을 우선하여 확인
- 선정방법 : 신청기간 마감 후 심사평가 실시
 - 선정기준 : 재무건전성 및 각종 기업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5. 기타사항

○ 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접수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과제명과 신청내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한 과제의 변경은 불가함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자는 이의 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기한 내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 31일 까지로 모든 과제는 기간 내 완료되어야 함(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진행기간 입력은 기업이 과제 추진에 예상되는 실 소요기간을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종 완료기한은 2025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출연 시군에 신청기업 소재 여부와 휴·폐업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정부 24, 국세청 등) 제출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장등록증명서(정부24, 팩토리온 등) 제출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 지방세납세증명서(정부24 등) 제출 *체납여부, 유효기간 사전 확인
- 미결산 등 사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등)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정부24, 국세청 등)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과세 표준증명원(정부24, 국세청 등)만 제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등) 필수 제출(`24년 12월 귀속분과 `23년 12월 귀속분)

○ 지원결정의 취소

- 타 지원사업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 사업 공고일 이전 이미 시행이 완료된 경우(사전신청과제만 해당)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제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비용지출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용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완료 시점(최대 25년 10월 31일)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과제완료 이전에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 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시 향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그 밖의 과제별 유의사항에 대하여 첨부된 사업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대행업체(제작업체) 선정시 유의사항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신청기업은 신청과제의 제작업체가 될 수 없음

○ 선정기업의 지원과제 비용지출 유의사항

- 선정기업이 총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것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선정기업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함

- 과제 소요비용의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단, 법인카드 사용시 ①법인카드 사본(앞면사진), ②카드사용 영수증, ③법인카드 이용 내역 명세서 사본 제출에 한해 적합한 비용증빙으로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결정액 초과분은 선정기업의 자부담으로 함
- 천원 미만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절사하여 지급함

○ 문 의 처

권역	지역	담당자
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김포시, 부천시	김장식 차장 070-7116-4812
	광명시, 군포시, 시흥시, 의왕시, 과천시	강정일 대리 070-7116-4816

2025년 3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